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가단53198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주식회사 A

2. B

변론 종결2024. 11. 15.

판결 선고2024. 12. 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2,935,421원 및 그 중 80,646,427원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10,214,137원에 대하여 2024. 5. 16.부터, 각 2024. 10. 11.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23. 12.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3. 12. 6. 접수 제275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최파라

별지